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769
----------	------

발의년월일 : 2008. 11. 5 .
발 의 자 : 강기태 의원 외
7 인

제안이유

-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골자

- 축제심의·평가위원회를 두고 축제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축제내용과 개최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 축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사항,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평가함.(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회 의원, 학계전문교수, 문화예술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임원등으로 구성함 (제4조)
-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매년 축제에 고나한 사업계획서를 축제개최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축제는 종료후 3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제10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로서 시민여가문화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문화 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기능)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축제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내용과 개최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
3. 축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4.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창조경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시의회의원
2. 학계 전문교수

3. 문화예술계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 임원
5. 그밖에 축제관련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 관광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 된 때
4.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제10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①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개최 6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한다.
④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야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 용역의뢰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